

포항시 건설공사 부실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6년 6월 18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1)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6월 8일, 포항시장

2) 회부일자 : 2026년 6월 8일

3) 상정일자

○ 제330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•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(2026. 6. 18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황태일 감사담당관)

1) 개정이유

○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부실공사 방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, 관련 조문을 현행화함으로써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.

2) 주요내용

가.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의 적용범위 조정(안 제3조)

○ 이 조례에 따른 적용범위 중 ‘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공사에 한한다.’를 ‘준공일로부터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의 공사에 한정한다.’로 수정

나.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(지방공무원 징계규칙, 포항시 일상감사 규정)를 현행화하여 정비(안 제12조 및 제13조)

3) 관계법령

○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8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종율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범위를 ‘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’로 규정하여, 이후 발견한 부실시공은 기한 경과를 이유로 신고·접수를 제한하는 등 소극행정 유발 및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이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,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